[2019년 6월] EU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EU 농산물 수출 증가

- 출처 : 유럽위원회(2019.06)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trade/documents/monitoring-agri-food-trade_mar2019_en.pdf)

◦ (수출입) 유럽위원회는 지난 6월 월간(2019년도 2~3월) 무역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3월 EU 농산물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가장 실적이 좋았던 `17년에 견주는 성과를 달성함
- `19년도 3월, EU 농산물 수출액은 126억 유로를 기록하고 약 25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나타냄

◦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동기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교역 대상국으로는 ① 중국(1.25억 유로), ② 미국(1.19억 유로), ③ 이집트(1.03억 유로) 등이 있으며, 수출 감소 대상국으로는 ① 사우디아라비아(0.96억 유로), ② 한국(0.24억 유로)등이 있음

◦ 한편, `19년도 3월 기준, 전월 대비 가격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한 식품군으로는 ① 밀(3.07억 유로), ② 증류주(0.88억 유로), ③ 목화 섬유질(0.72억 유로)로 집계된 반면, 수출 감소를 나타낸 식품군으로는 ① 사탕무 등의 당류(0.52억 유로), ② 식용용 원피(0.43억 유로)로 조사됨

◦ (수입) 한편, `19년도 3월 기준, 전월대비 對 유럽연합 농산품의 수입이 가장 활발하게 증가한 국가로는 ① 미국(1.38억 유로), ② 우크라이나(0.87억 유로), ③ 가나(0.48억 유로)가 있으며, 수입 감소 국가로는 ① 아르헨티나(0.72억 유로), ② 캐나다(0.53억 유로) 등이 있음
- ① 대두(0/73억 유로), ② 곡물류(0.68억 유로)의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① 열대신선 및 건조과일(0.71억 유로), ② 양 및 염소고기(0.55억 유로)의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함

◦ (`18년도 4월 ~`19년도 3월 수출입 통계) 유럽연합은 지난 1년간의 농산물 수출입 기록을 통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① 미국(228억 유로), ②중국(114억 유로), 스위스(830억 유로)를, 수출 증가 품목으로 ① 증류주(8.61억 유로 ↑), ②밀(5.51 유로 ↑), ③파스타(3.42억 유로 ↑)로 분석함

- 반면, 유럽연합의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 대상국으로는 ① 미국(23.7억 유로, 23% ↑), ② 우크라이나(5.1억 유로, 23% ↑), ③ 가나(3.1억 유로, 25% ↑)로 나타남
- 인기 수입 증가 품목으로 ① 곡물류(11.44억 유로 ↑), ②깻묵(6.65억 유로 ↑), ③감귤류를 제외한 열대신선 및 건조과일6.63억 유로 ↑)등으로 조사됨

◦ 유럽연합 수출입 대상국 및 식품군별 상세 수출입비중은 상기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2. 규정 (EU) 2019/1013 발표 :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특정 동물 및 물품의 사전 공지에 관한 규정’ 실행

- 출처:EUR-Lex(2019.04.1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013)

◦ 해당 규정은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2017년 3월 15일,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및 사료에 관련하여 재정한 규정 (EU) No 2017/625[1)]와 연관된 규정임

- 규정 (EU) No 2017/625는 기존의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EC) No 999/2001, (EC) No 396/2005, (EC) No 1069/2009, (EC) 1107/2009, (EU) 1151/2012, (EU) No 652/2014, (EU) 2016/429, (EU) 2016/2031 및 위원회 규정 (EC) No 1/2005, (EC) No 1099/2009, 위원회 지침 98/58/EC, 2007/43/EC, 2008/119/EC ACL 2008/120/EC를 수정하고 7 의회와 위원회가 재정한 규정 (EC) No 854/2004, (EC) No 882/2004 및 위원회 지침 89/608/EEC, 90/425/EEC, 90/425/EEC, 91/496/EEC, 96/23/EC, 96/93/EC, 96/78/EC, 위원회 결정 92/428/EEC(공식규제규정[2)])의 제 58조 1문단 Point (b)를 철회한 규정임

1) 규정 (EU) No 201762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7R0625

◦ 규정 (EC) No 2017/625는 유럽연합국민 뿐 아니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특히 제 3국에서 들여오는 특정 동물 및 물품에 제재되는 규정임

- 상세 규제대상은 유전자변형식품, 식품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3)]

◦ 규정 (EU) 2017/625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상기의 물품이 유럽연합에 입국되기 전, 사전 수하물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당국[4)]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상기의 규정이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하여, 사전수하물 입국신고서가 최소 근무일자 1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됨

◦ 한편, 운송 형편에 따라, 근무일자 1일 전까지 사전 수하물 입국신고서의 작성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련 사업자는 제 56조 3항의 point (a)에 의거하여, 수하물 도착 4시간 전까지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를 제출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는 배송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시간이 1일 이하로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함

◦ 위원회는 규정 (EU) 2019/1012에서 유럽 연합 국경으로 수입되는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는 사전입국신고서의 제출을 특정지형의 제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을 위임함[5)]

-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는 이동 검열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신규 규정은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의 반입이 규제 없이 면제되는

---

2) ojl95, 7.4.2017, p.1

3) 규제 대상은 하기 내용을 참조바람
규정 (EU) 2017/625의 제 47조 1항 혹은 제 1조 2항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7R0625

4) 관련당국 :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border control posts는 EU 법령에 의하여 동물 및 동물과 관련된 물품이 EU 국경에 입국되는 경우, 관련한 통제작업을 실행하도록 지정되고 허가된 검열소를 뜻하며, 검열소의 리스트는 'EU approved border inspection posts(BIP)로 검색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하기링크를 참조바람
https://ec.europa.eu/food/animals/vet-border-control/bip_en

5) 위원회는 2019SUS 3월, 규정 (EU) 2019/1012이 유럽연합 및 위원회가 재정한 규정 (EU) 2017/625에서 검열소의 최소요구사항과 관련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위임함

편보다 사전입국 신고서의 제출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통제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마련됨

◦ 규정 (EU) 2017/625가 2019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행함에 따라, 해당 규정도 동일일자부터 실행되어야 함

◦ 상기된 일렬의 신규규정 재정은 식물, 동물, 식품과 사료 상임위원회 (The Stand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의 견해와 일치함

- 아 래 -

제 1 조 : 사전 수하물 입국신고

◦ (EU) 2017/625 제 47조 1항과 관련한 특정 동물 및 물품 취급자는 해당물품의 반입 최소 근무일자 1일 전, 사전 수하물 입국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함

◦ 한편, 운송형편에 따라, 근무일자 1일 전까지 발송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하물 도착 4시간 전까지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를 제출 할 수 있음

◦ 또한, 위원회 규정 (EU) 2019/1012 제 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의 수입은 수하물 도착 최소 근무일자 5일 전까지 입국신고서가 발송되어야 하는 규정이 제재될 수 있음

제 2 조 : 효력 발효일

◦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관보 공표일[6] 20일 후부터 효력을 가짐

◦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됨

6) 공표일 : 2019.06.21

3. 규정 (EU) 2019/1101 발표 :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감자 및 관상식물의 경작에 사용되는 화학 살균제 Tolclofos-methyl[7]와 관련하여 재정한 규정 (EC) No 1107/2009 및 규정 (EU) No 540/2011의 부속서 개정

- 출처:EUR-Lex(2019.06.2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101&rid=16)

◦ 화학 살균제 Tolcofos-methyl과 관련한 기존 위원회 지침으로는 2006/39/EC와 91/414/EEC, 규정으로는 (EC) No 1107/2009, (EU) No 540/2011 및 (EU) No 884/2012가 있음

◦ 규정에 비해 선행하였던 상기 2개의 의원회 지침은 규정 (EC) No 1107/2009의 재정시 활성물질로 등록됨에 따라 이미 폐기된 바 있으며, 해당 활성물질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11년도 재정된 (EU) No 540/2011에 명시됨

◦ (EU) No 540/2011은 화학 살균제 tolclofos-methyl의 사용기한을 2020년 4월 30일로 규제하고 있음

◦ 한편, 최근 해당 물질 사용기한 갱신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됨. 규정 (EU) No 844/2012 제 1조, 6조는 기한 만료 전 특정 기간 동안, 회원국 관련당국에서의 갱신을 허가함

◦ 관련당국은 수렴한 갱신 신청서를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16년 11월 11일, 이를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제출함

- 유럽식품안전청은 이를 검토하고 `17년 12월 8일, 최종 코멘트를 위원회에 제출함
  - · 유럽식품안전청은 해당 코멘트에서 Tolclofos-methyl의 사용이 화학 제품일렬과 관련한 규정 (EC) No 1107/2009의 제 4조에서 규제하는 ‘ 살균제의 기준’과 부합한지 의문점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의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함
- `18년 10월 5일,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식품안전청의 권고를 받아들임.
  - · 위원회는 `18년 11월 15일, 해당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며, 관상식물과 감자재배에서의 부분적 사용(수중에 닿는 부분)의 안전성

7) 동물성 지방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섭취되는 트랜스지방은 제외함

검토를 식물, 동물, 식품과 사료 상임위원회(The Stand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에 의뢰함

- 또한, 기존의 갱신 신청자에게 해당 식품의 갱신이 불가함을 통지하고, 규정 (EC) No 1107/2009에 따른 신청서의 재제출을 요청함

◦ 이에 따라, 신청자는 규정 (EC) No 1107/2009 및 (EU) NO 540/2011에 의거, Tolclofos-methyl의 사용기한 연장을 재요청함

◦ 유럽식품안전청 및 위원회는 현재의 과학기술의 지식에 기반하여, ‘ 해당 물질의 사용이 인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는 결론을 도출함

- 이에 따라, Tolclofos-methly은 더 이상 살균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환경(관상식물 및 감자의 재배 시 수중에 닿는 부분)에 한해 사용을 허가함

◦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관련 규정 (EU) No 540/2011은 수정되어야 하며, 또한 tolclofos-methyl의 사용 기한 역시 연장되어야 함

◦ 상기된 일렬의 신규규정 재정은 식물, 동물, 식품과 사료 상임위원회 (The Stand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의 견해와 일치함

◦ 유럽의회와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아래의 세부내용을 규정 (EC) No 2019/1101의 내용으로 규정함

- 아 래 -

제 1 조

◦ 활성 물질 tolclos-methyl의 갱신내용은 부속서 I에 기재됨

제 2 조

◦ 규정 (EU) No 540/2011 부속서 II의 내용은 해당 규정의 부속서 II의 내용으로 개정됨

◦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관보 공표일[8] 20일 후부터 효력을 가짐. 해당 규정은 `19년도 9월 1일부터 적용됨

※ 부속서 I

물질명	Tolclofos-methyl CAS No 57028-04-9 CIPAC No 479
IUPAC 명	O-2, 6-dichloro-p-tolyO, O-dimethyl phosphorothioate O-2, 6-dichloro-4-methylpernyl O, O-dimethyl phosphorothioate
순도	>=960g/kg 해당수치이상은 독성이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Methanol의 사용 역시 1g/kg으로 제한함
허가일	2019.09.01.
허가만료일	2034.08.31
상세규정	관상식물, 감자제배 사용에 제한함 - 규정 (EC) No 1107/2009 제 29조 6항해 한하여, 단일원칙실행조건을 준수함. tolclofos-methyl사용기한 갱신에 관련한 결론은 부록 I, II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해당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은 ■ 수중동물과 포유류의 안전성 위험 ■ 감자의 DM-TM-CH2OH 물질이 인체 신진대사에 미칠 영향 ■ 재배, 운송 및 작업인력에 미칠 영향 을 수반하며, 이를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함

※ 부속서 I II

- 해당 부록은 규정 (EU) No 540/2011에서 해당물질 실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수정됨
  (1) 파트 A, tolclofos-methyl(126번 물질)의 삽입이 삭제됨
  (2) 파트 B, 아래와 같은 표가 추가됨

물질명	Tolclofos-methyl CAS No 57028-04-9 CIPAC No 479
IUPAC 명	O-2, 6-dichloro-p-tolyO, O-dimethyl phosphorothioate O-2, 6-dichloro-4-methylpernyl O, O-dimethyl phosphorothioate
순도	>=960g/kg 해당수치이상은 독성이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Methanol의 사용 역시 1g/kg으로 제한함
허가일	2019.09.01.
허가만료일	2034.08.31
상세규정	관상식물, 감자제배 사용에 제한함 - 규정 (EC) No 1107/2009 제 29조 6항해 한하여, 단일원칙실행조건을 준수함. tolclofos-methyl사용기한 갱신에 관련한 결론은 부록 I, II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해당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은

8) 2019.06.27. .

	■ 수중동물과 포유류의 안전성 위험 ■ 감자의 DM-TM-CH2OH 물질이 인체 신진대사에 미칠 영향 ■ 재배, 운송 및 작업인력에 미칠 영향 을 수반하며, 이를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없음

Ⅲ 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없음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9.01.01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